

교육혁신단 규정

2016. 2. 26. 제정
2019. 10.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이하 “교육혁신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혁신단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0.)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국내외 기관 협력에 기여
2. 효과적 교수학습법 지원 및 연구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과 운영
4. 국내외 MOOC 콘텐츠 개발과 운영
5. 삭제 (2019.6.20.)
6. 삭제 (2019.6.20.)
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행 (신설 2019.6.20.)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6.16., 2019.6.20.)

제3조(단장) ① 교육혁신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정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조직)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센터, 미래혁신센터, SW교육총괄본부를 둔다. (개정 2016.6.16., 2018.6.20., 2019.6.20.)

- ② 교육혁신센터에 교육기술실을 둔다. (개정 2019.6.20.)
- ③ 삭제 (2019.6.20.)
- ④ 삭제 (2019.6.20.)
- ⑤ SW교육총괄본부에 실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6.20.)

제5조(센터장 등) ① 센터에 센터장을, 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 및 본부에 실장, 분과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① 교육혁신센터는 대학 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및 기획, 교수법 및 학습법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개발, 사이버캠퍼스 등 교내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과 온라인 강좌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6.20.)

- ② 교육혁신센터의 교육기술실은 강의실 기자재 및 비품을 관리하고,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며, 본교 중앙행정기관 주최 행사의 A/V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교육혁신단 규정

다. (개정 2018.6.20., 2019.6.20.)

③ 삭제 (2018.6.20.)

④ 삭제 (2019.6.20.)

⑤ 삭제 (2019.6.20.)

⑥ 삭제 (2019.6.20.)

⑦ 미래혁신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기타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행기관이 지정된 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6.20.)

⑧ SW교육총괄본부는 SW중심대학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6.20.)

제7조(교육혁신위원회) ①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교육역량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 호크마교양대학장, 교무처장, 인재개발원장,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평가), 총장이 위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 조형예술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소속 교원 각 1명,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2019.6.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교수학습개발위원회) ① 교수·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 온라인 강의 및 MOOC의 운영과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0.)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처장, 교육혁신센터장으로 하고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8.6.20.)

제10조(저작권위원회) ① 교내 온라인 강의, MOOC 및 공개 콘텐츠 배포상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정보통신처장, 교무처부처장, 기획처부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등 관련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제11조 삭제 (2019.6.20.)

제12조 삭제 (2019.6.20.)

제12조의2(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 정보통신처장, 대외협력처장, 미래혁신센터장, 인재개발원장 및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20.]

제12조의3(SW중심대학사업 추진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SW중심대학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및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SW중심대학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20.]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교육혁신단은 각 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6.16.)

제14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교육혁신단은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제15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 교육혁신단의 경비는 본교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16.)

② 교육혁신단의 현금출납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16., 2018.6.20.)

제16조(운영세칙)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6.)

부칙 (2016. 2. 26. 제정)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혁신단 규정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본문,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 중 미래혁신센터 및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 제1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